

2025-04-24

(25-2807)

페이지: 1/2

무역기술장벽위원회

원본: 영어

통보

개정

다음 고지는 10.6항을 근거로 회람한다.

1. 통보국가: 말레이시아

해당할 경우,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(3.2 및 7.2):

2. 담당기관(Agency responsible):

에너지위원회(ST)
No. 12, Jalan Tun Hussein,
Precint 2,
62100 Putrajaya, MALAYSIA.
전화: +(603) 8870 8500
팩스: +(603) 8888 8637
웹사이트: <http://www.st.gov.my>

위의 내용과 다를 경우, 고지에 관련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이나 담당기관 이름과 주소(가능한 경우, 전화 및 팩스 번호, 이메일 및 웹사이트 주소를 포함)를 표시해야 한다.

3. 조항 2.9.2 [X], 2.10.1 [], 5.6.2 [X], 5.7.1 [], 3.2 [], 7.2 [], 기타에 근거해 통보:

4. 해당제품(해당할 경우 HS 또는 CCCN, 그렇지 않으면 국정세율 제목. 해당할 경우, ICS 회원국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): 가전제품: 안전성 및 에너지 효율을 다루는 에너지위원회 규제 대상 34종 전기 기기 품목군(ICS: 97.030)

5. 제목(페이지수, 언어): 전기기기 승인 지침(전기 규정 1994) 2024년판(GP/ST/No.37/2024) (98페이지, 영어)

6. 내용: 이러한 지침에서 기술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규제 대상 전기기기 목록
- 다음과 관련한 신청서 제출 시 신청자가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조건:
- 제조 또는 수입을 위한 등록증(CoR)
- 적합성 평가 기관(CAB) CoR
- 전기기기의 수입, 제조, 전시, 판매 및 광고를 위한 승인서(CoA)
- 전기기기의 수입, 제조, 전시, 판매 및 광고를 위한 CoA 갱신
- 국가 편차
- 에너지 효율성
- 라벨링 요건

이러한 지침은 규제 대상 전기기기의 모든 제조업체, 수입업체, 전시업체, 판매업체 및 광고주와 등록된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에 적용하여 1990 전기공급법[법률 제447호] 및 1994 전기규정[P.U.(A) 38/1994]의 준수를 보장한다.

7. 적용할 경우,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표와 근거: 지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.

1. 말레이시아에서 전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게 관련 정보와 절차를 제공하여 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2. 모든 규제 대상 전기기기의 제조업체, 수입업체, 전시업체, 판매업체 및 광고주에게 CoA 승인을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승인된 개정된 IEC(국제전기기술위원회) 표준 및 MS 표준(말레이시아 표준)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.
3. 전기기기 관련 기술 개발을 수용한다.
4. 소비자, 인체 건강 및 안전,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만적 행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.

기만행위 방지 및 소비자 보호, 인체 건강 및 안전 보호, 환경 보호

8. 관련 문서: -

1. 1990 전기공급법[법률 제447호] 및 1994 전기규정[P.U.(A) 38/1994]

9. 채택 예정일: 2024-06-21

시행 예정일: 2025-06-21

10. 의견 마감일: 통보일로부터 60일

11. 문건을 확인할 수 있는 출처: 국가 질의처 [X] 또는 주소, 전화와 팩스 번호, 그리고 이메일과 웹사이트 주소, 해당할 경우, 다른 기관:

<https://www.st.gov.my/eng/web/download/listing/150>

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MYS/25_02998_00_e.pdf

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MYS/25_02998_01_e.pdf